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금융상품은?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연말정산 이 다가오게 되면 직장인들의 재테크 머리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회전한다. 1년 재테크 농사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절세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소득공제 가능한 절세상품의 활용. 소득공제를 위해 비용지출은 늘릴 수 없지만 저축과 함께 절세효과까지 얻는다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절세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살펴본다.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들의 소득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2000.12.31 판매종료), 2000년 10월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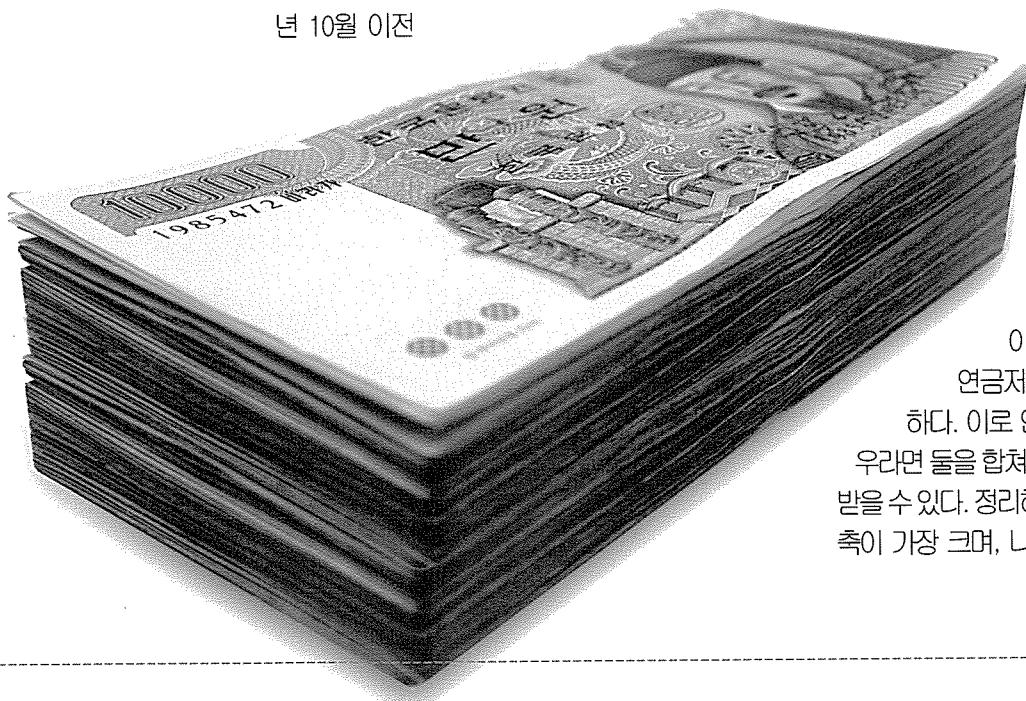
에 가입한 청약부금 등이 해당한다. 먼저 장기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96만원이며, 세 상품을 합쳐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된다. 예컨데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올해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를 통해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모두 차워진 만큼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나 청약저축(또는 청약부금)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여서 저축금액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 그대로 소득공제 받는 것이어서 소득공제율로 보면 다른 어떤 상품 보다도 공제효과가 크다. 다만,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있어 연간 240만원까지만 가능해

초과 저축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역산해 보면 연간 180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된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

하다. 이로 인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둘을 합쳐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소득공제효과는 연금저축이 가장 크며, 나머지 상품들은 저축액의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상품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 초과 저축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한된 금액을 투자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상품마다 특징이나 의무가입기간이 다 다른 만큼 소득공제효과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조건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한다. 역시 고민한 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연 얼마 만큼의 세금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10만원 세액공제라고 하면 1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그 만큼 환급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

한 세금환급 효과는 과세표준(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8%에서 최고 38.5%의 4단계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라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8.8% 세율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18.7%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똑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라도 적용세율이 8.8%인 사람은 8만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지만 과세표준이 커 38.5%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38만5천원의 세금환급 효과를 얻는 식이다. 특히 부부가 둘 다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소득자라면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해 어느쪽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답은 소득이 많은 쪽, 정확하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청약저축	월2만원 ~ 10만원		96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분기 300만원	연간 불입액 40%, 72만원 한도	2000. 12. 31 기입종료
연금저축	분기 300만원	연간 불입액 100%, 100만원 한도	

종합소득세율

주택청약저축	세율(주민세 포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8.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8.7%	990,00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8.6%	4,950,000
8천만원 초과	38.5%	12,870,000